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3월 2일 나득수, 이진연, 안효식,
원정은, 김인숙 의원 등 22인

나. 회부일자 : 2011년 3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3. 10) 상정
-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3. 10)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나 득 수 의원)

□ 제안이유

- 날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 시민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유통산업에 대한 시장·시민·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나. 유통산업상생발전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취소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마.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조건부과, 등록심의·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 속기록 참고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조례안 제14조(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제1항 규정에 의하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6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나뉘어 지고 있어, 자칫 행정소송 우려가 예상되는데?</p>	<p>○ 제1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의 재의요구 내용 중 6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p>
<p>○ 조례안 제16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제1항에서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가 상설인지, 비상설인지 여부?</p>	<p>○ 조례안 제16조 등록심의위원회는 시행규칙 제정 시 비상설 기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유통산업을 지원하고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천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

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기업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에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의 대표
3. 중소유통단체 대표 등
4.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
5.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 6.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 4. 부천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8. 제14조제5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시민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 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6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협의를 성립되지 않는 경우

2.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이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근린공원 내에 들어서는 체육근린시설에 개설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 제14조제2항의 구비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건축허가의 유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대지·건축의 소유권·사용권의 사실여부

2. 개설하고자 하는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

③ 심의위원회는 지역여건, 주거환경 적합성, 주변시설 및 구조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수리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통업 및 중소기업 등 관련된 경제 및 건축부서의 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4. 중소기업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